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16. . . (제 회)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
제출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 주문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특허법 개정(법률 제14035호, 2017.3.1. 시행)에 따라 특허공보 게재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우선심사 대상을 추가하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9.30.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요건 완화(안 제8조의2)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가 소속된 기관은 그 변리사가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변리사가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이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허용함

### 나. 우선심사 대상 확대(안 제9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유도를 위한 지식재산 경영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식재산권 활용도가 높은 인증기업들의 신속한 권리

획득을 지원하고 인증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동 인증기업의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함

다. 특허공보 게재사항 정비(안 제19조제2항)

- 1) 특허권자 성명·주소, 특허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등 일부 특허공보 게재사항이 특허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 2) 특허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특허취소신청제도에서 특허취소신청절차 중 특허권자의 정정청구가 허용됨에 따라, 그 정정청구 후 특허가 등록유지된 경우 정정 내용을 특허공보에 반영하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규정 신설(안 제19조의2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서는 대통령령 이상의 근거 규정이 요구됨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10. ~ 11)  
3) 행정규제 :

##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3호 중 “동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를 “동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겸업하는 자”로 한다.

제9조에 제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4.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법 제87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분류기호

제19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를 “명세서 및 도면”으로,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를”을 “명세서 및 도면을”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법 제133조의2”를 “법 제132조의3, 제133조의2”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호의4의 개정규정은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이 이 영 시행 이후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라 등록된 변리사가 없을 것

4. (생략)

② ~ ④ (생략)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

1. ~ 5의3. (생략)

<신설>

6. ~ 12. (생략)

제19조(특허공보) ① (생략)

② 등록특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특허권자가 자연인인 경우

우: 성명 및 주소

나. 특허권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영업소의

조에 따른 업무를 겸업하는 자-----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

-----  
-----  
-----  
-----  
-----.

1. ~ 5의3. (현행과 같음)

5의4.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 중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6. ~ 12. (현행과 같음)

제19조(특허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87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

<삭제>



소재지

2. 출원번호·분류기호 및 출원  
연월일

3.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4. 특허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5. 등록공고연월일

6. ~ 7. (생략)

8.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설정등록 시에  
첨부된 명세서·도면 및 요약  
서를 말한다)

9.·10. (생략)

11. 법 제133조의2,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라 정정된  
내용

12. (생략)

③ ~ ⑤ (생략)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생략)

<신설>

2. 분류기호

<삭제>

<삭제>

<삭제>

6. ~ 7. (현행과 같음)

8. ----- 명  
세서 및 도면-----  
-----  
----- 명세서 및 도면  
을 -----

9.·10. (현행과 같음)

11. 법 제132조의3, 제133조의  
2-----  
-----

1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해 주민등록표 등  
본·초본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  
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특허심사제도과	
연 락 처	042-481-8243